
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스퀘어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 산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 2 조 (적용범위)
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 3 조 (구성 및 위원 선임)

-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③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의 호선으로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둔다. <개정 2026. 3. 25.>

-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 5 조 (권한)
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1.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 추천 <개정 2026. 3. 25.>
2. 기타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개정 2026. 3. 25.>

제6조 (소집)

-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개최의 필요성이 있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7조 (의결 방법)

-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② 의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단,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③ 위원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고,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④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및 의결 참여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8조 (독립이사 후보 추천)

- ① 회사는 독립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,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이를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독립이사 후보군을 평가하여 독립이사 후보 목록을 확정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③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규 독립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제2항의 독립이사 후보 목록의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 9 조 (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)
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3. 25.>

제10조 (의사록)

-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3. 25.>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3. 25.)

이 규정은 2026. 7. 23.부터 시행한다.